

의안번호	2115237
의 퇴 인	정점식 의원
회 답 일	2022.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비용추계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237)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비고
농업인의 직접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 감면대상: 후계·청년 농업인 추가 · 감면율: 50% → 60%
어업인의 직접 취득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안 제9조제1항)	○	· 감면대상: 후계·청년 어업인 추가 · 감면율: 50% → 6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용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 10조제1항)	○	· 감면율: 50% → 60% · 적용기한: 2022년 → 2023년

II. 비용추계 결과

□ 재정수입 변화 : 향후 1년간 총 33.3억원, 연평균 33.3억원 감소

[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2023년

(단위: 억원)

	2023년	누적	연평균
농업인의 직접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29.1	-29.1	-29.1
어업인의 직접 취득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안 제9조제1항)	-0.5	-0.5	-0.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용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 10조제1항)	-3.8	-3.8	-3.8
계	-33.3	-33.3	-33.3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2
III. 비용추계의 전제	3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5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농어업인의 직접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2023년 1년간 총 3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3년까지 적용 예정인 농업인 직접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후계·청년 농업인을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경우, 취득세는 2023년 1년간 총 2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3년까지 적용 예정인 어업인 직접 취득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후계·청년 어업인을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경우, 취득세는 2023년 1년간 총 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용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상향(현행 50% → 개정안 60%)하고, 전체 농어업인의 용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023년 1년간 총 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2023년

(단위: 억원)

	2023년	누적	연평균
농업인의 직접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29.1	-29.1	-29.1
어업인의 직접 취득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안 제9조제1항)	-0.5	-0.5	-0.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용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 10조제1항)	-3.8	-3.8	-3.8
계	-33.3	-33.3	-33.3

II. 재정수반요인

- 농어업인의 직접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표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항	감면내용	
	현행	개정안
자경농민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감면대상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종사자 2)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감면율: 50% · 적용기한: 2023.12.31.	· 감면대상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종사자 2) <u>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u> · 감면율: <u>60%</u> · 적용기한: 2023.12.31.
자영어민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 감면대상 1)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후계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 감면율: 50% · 적용기한: 2023.12.31.	· 감면대상 1)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u>후계어업인 또는 청년어업인</u> · 감면율: <u>60%</u> · 적용기한: 2023.12.31.
농어업인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감면율: 50% · 적용기한: 2022.12.31.	· 감면율: 50% (단,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60%</u>) · 적용기한: 2023.12.31.

- 개정안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대상은 ‘농업을 주업²⁾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종사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자경농민’)이며,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1) 유형별 정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
 2) 주업이란 ‘전업+제1종겸업’을 의미하며, 전업은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를, 제1종겸업은 겸업수입이 농·어업 수입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

- 후계농업인: 농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50세 미만인면서, 영농경력이 10년 미만인 자
 - 청년농업인: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인 자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인 중 영농계획을 평가하여 선정한 자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중 영농계획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감면대상은 ‘어업(양식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³⁾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며,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후계어업인: 어업(양식업 포함)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50세 미만인면서, 영어기간이 10년 미만인 자
 - 청년어업인: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인 자
 - 후계어업경영인: 후계어업인 중 ‘수산업경영인 육성’ 사업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영어기간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중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Ⅲ. 비용추계의 전제

- 개정안은 2022년 중 통과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3년에 발생한다고 가정
- 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 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은 현행 2022년 12월 31일이며, 개정안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향후 취득한 농지 및 어업권 등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
 -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지방세법」 제20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향후 발생하는 용자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한 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 이에 대한 등록세 감면이 취득 당해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
 -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지방세법」 제30조)
- 개정안에 따른 향후 건당 감면액은 최근 3개년 및 5개년 감면실적의 뚜렷한 추세가 관찰되지 않음에 따라 2020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감면을 상향에 따라 개정안 적용 대상에 한정하여 증가할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후계·청년 농어업인에 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20년 기준 유형별 농업인 비율과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1년 기준 유형별 어업인 비율,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의 2020~2021년 기준 경력별·연령별 농어업인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현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아닌 후계·청년 농어업인 인원 추정을 위해 각 자료의 유형별 인원 비중 및 분포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신규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가정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농업 경력이 2년 미만이면서 연령이 40세 미만인 자 또는 50세 미만인 자
 - 현행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후계·청년 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2년 미만 영농종사자에 속함
 - 후계·청년 농업인의 연령기준은 후계 농업인 50세 미만, 청년 농업인 40세 미만임
 - 농·어업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 중 농·어업 경력이 10년 미만이면서 연령이 50세 미만인 자 또는 농·어업 경력에 관계없이 연령이 40세 미만인 자
 - 현행 농어업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후계 농어업인은 농어업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 중 10년 미만 영농·영어종사자이면서 연령기준 50세 미만에 속함
 - 현행 농어업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청년 농어업인은 농어업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 중 연령기준 40세 미만에 속함

[표 3] 감면대상 구분

구분		연령		
		40세 미만	50세 미만	50세 이상
주업 ¹⁾	2년 미만	청년 농어업인	후계 농어업인	적용 제외
	2년 이상 10년 미만	기존 감면대상		
	10년 이상			
부업 ²⁾	2년 미만	청년 농어업인	후계 농어업인	적용 제외
	2년 이상 10년 미만			적용 제외
	10년 이상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주: 1) 주업이란 '전업+제1종겸업'을 의미하며, 전업은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를, 제1종겸업은 겸업 수입이 농·어업 수입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

2) 부업이란 제2종겸업을 의미

3) 음영처리된 부분은 현행 감면 미대상 중 후계·청년 농어업인 요건을 만족하여 개정안에 따라 추가 되는 감면대상

-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비중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자료로 확인되는 농어업인은 전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했을 것으로 가정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직접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표 4]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항	감면내용	
	현행	개정안
자경농민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감면대상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종사자 2)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감면율: 50% · 적용기한: 2023.12.31.	· 감면대상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종사자 2) <u>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u> · 감면율: <u>60%</u> · 적용기한: 2023.12.31.
자영어민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 감면대상 1)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후계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 감면율: 50% · 적용기한: 2023.12.31.	· 감면대상 1)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u>후계어업인 또는 청년어업인</u> · 감면율: <u>60%</u> · 적용기한: 2023.12.31.
농어업인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감면율: 50% · 적용기한: 2022.12.31.	· 감면율: 50% (단,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60%</u>) · 적용기한: 2023.12.31.

□ 동 조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실적은 2020년 기준 취득세 896.7억원(농업인 892.0억원, 어업인 4.7억원), 등록면허세 252.4억원 규모

- 2020년 기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건수는 6.9만건, 건당 감면액은 128.9만원 수준
- 2020년 기준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건수는 373건, 건당 감면액은 126.4만원 수준
- 2020년 기준 농어업인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건수는 37만건, 건당 감면액은 6.8만원 수준

[표 5] 농어업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실적: 2016~2020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자경농민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감면액 (억원)	795.5	833.6	802.7	765.4	892.0
	감면건수 (건)	66,647	68,670	68,354	64,721	69,202
	건당 감면액 (만원)	119.4	121.4	117.4	118.3	128.9
자영어민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	감면액 (억원)	2.4	2.5	3.3	5.1	4.7
	감면건수 (건)	381	364	335	392	373
	건당 감면액 (만원)	64.0	69.7	97.7	130.6	126.4
농어업인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감면액 (억원)	381	337	235.7	236.3	252.4
	감면건수 (건)	341,523	297,106	298,292	292,427	369,009
	건당 감면액 (만원)	11.1	11.3	7.9	8.1	6.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2020년 기준 건당 감면액에 감면을 상향분(10%p)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건당 세수효과를 추정

[표 6]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총감면액 추정

(단위: 만원)

구분	건당 감면액 (2020년 기준, A)	건당 세수효과 ($B=A \times 10/50$)
자경농민 취득세	128.9	25.8
자영어민 취득세	126.4	25.3
농어업인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6.8	1.4

- (신규 감면건수) 현행 전체 감면대상 중 2020년 기준 실제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비율을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감면대상에 곱하여 신규 감면건수 추정
- (농업인 대상 신규 감면건수)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형별 농업인 분포를 바탕으로 2020년 기준 감면비율을 적용한 결과 개정안에 따른 신규 감면건수는 1,715건으로 추정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의 2020년 기준 유형별 농업인 분포는 다음과 같으며,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감면대상은 경력 2년 미만 주업 경영주 중 50세 미만인 자와 경력 10년 미만 부업 경영주 중 50세 미만인 자

[표 7] 유형별 농업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경영주 (C=A+B)	주업(A)	경력 2년 미만(추정) ¹⁾		부업(B)	경력 10년 미만	
			50세 미만	5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인원	1,035,193	728,860	2,959	10,349	306,333	16,778	69,476

주: 1) 경력별 인원은 5년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경력 5년 미만 경영주에 일정 비율(40%)을 적용하여 2년 미만 경영주 인원 추정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020.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20년 기준 유형별 농업인 인원은 전체 경영주, 후계 농업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형별 농업인 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8] 유형별 농업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경영주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인원	1,035,193	33,461	2,800	12,426	1,600
비율	100.0	3.2	0.3	1.2	0.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현행 감면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중 경력이 2년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포함한 인원으로, 약 72만명으로 추정
- 전체 감면대상(72만명) 중 실제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비율은 9.6%

[표 9]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계산식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대상(2020년 기준) = 주업 경영주 - 경력 2년 미만 경영주 +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728,860 - 13,308 + 2,800 + 1,600
= 719,952(명)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비율(2020년 기준) = 취득세 감면건수 ¹⁾ ÷ 취득세 감면대상
= 69,202 ÷ 719,952
= 9.6(%)

주: 1) [표 5]의 2020년 기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건수

- 개정안에 따른 신규 감면건수는 1,715건으로 추정

[표 10] 개정안에 따른 신규 감면건수 추정

개정안에 따른 신규 감면대상 = (경력 2년 미만 주업 경영주 중 50세 미만 + 경력 10년 미만 부업 경영주 중 50세 미만) × (1 - 후계·청년 농업인 중 현재 감면대상 비율 ¹⁾)
= (2,959 + 16,778) × (1 - 9.6%)
= 17,845(명)
개정안에 따른 신규 감면건수 = 신규 감면대상 × 2020년 기준 취득세 감면 비율
= 17,845 × 9.6%
= 1,715(건)

주: 1) [표 8]에 정리된 후계·청년 농업인 중 현재 감면대상인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비율은 9.6%(4,400명 / 45,887명)

○ (어업인 대상 신규 감면건수) 해양수산부의 유형별 어업인 분포를 바탕으로 2020년 기준 감면비율을 적용한 결과 개정안에 따른 신규 감면건수는 0,000건으로 추정

- 해양수산부의 2021년 기준 유형별 어업인 분포는 다음과 같으며,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감면대상은 경력 10년 미만 부업 어업인 중 50세 미만인 자

[표 11] 유형별 어가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가구, 명)

구분	전체 어가 ¹⁾ (C=A+B)	주업 어가 (A)	부업 어가 (B)	경력 10년 미만 어가(추정) ²⁾	50세 미만 인원(추정) ³⁾	50세 이상 인원(추정) ³⁾
인원	43,327	31,596	11,731	1,183	601	1,961

주: 1) 어업인의 경우 주·부업 구분, 경력별 자료는 가구 단위로 제공

2) 주·부업 여부와 경력별 자료는 별도로 제공되고 있어 부업 어가에 경력 10년 미만 가구 비율(10.1%)를 적용하여 부업 어가 중 경력 10년 미만 가구 수 추정

3) 연령별 인원은 어업인의 가구별 분포가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1년 기준 유형별 어업인 인원은 전체 어업인,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형별 어업인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12] 유형별 어업인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어업인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인원	93,798	22,019	506	14,103	206
비율	100.0	23.5	0.5	15.0	0.2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현행 감면대상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원에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을 더한 인원으로, 약 6.9만명으로 추정
- 전체 감면대상(6.9만명) 중 실제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비율은 0.5%

[표 13] 자영농민 취득세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 계산식

$\begin{aligned} \text{자영어민 취득세 감면대상(2020년 기준)} &= \text{주업 어업인}^{1)} + \text{후계어업경영인} + \text{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 &= 68,402 + 506 + 206 \\ &= 69,114(\text{명}) \\ \text{자영어민 취득세 감면 비율(2020년 기준)} &= \text{취득세 감면건수}^{2)} \div \text{취득세 감면대상} \\ &= 373 \div 69,114 \\ &= 0.5(\%) \end{aligned}$
--

주: 1) 어업인의 가구별 분포가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여 주업 어업인 인원 추정

2) [표 5]의 2020년 기준 자영어민 취득세 감면건수

- 개정안에 따른 신규 감면건수는 3건으로 추정

[표 14] 개정안에 따른 신규 감면건수 추정

$\begin{aligned} \text{개정안에 따른 신규 감면대상} &= (\text{경력 10년 미만 부업 어업인 중 50세 미만}) \\ &\quad \times (1 - \text{후계·청년 어업인 중 현재 감면대상 비율}^{1)}) \\ &= 601 \times (1 - 2.0\%) \\ &= 590(\text{명}) \\ \text{개정안에 따른 신규 감면건수} &= \text{신규 감면대상} \times \text{2020년 기준 취득세 감면 비율} \\ &= 590 \times 0.5\% \\ &= 3(\text{건}) \end{aligned}$

주: 1) [표 12]에 정리된 후계·청년 어업인 중 현재 감면대상인 후계어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비율은 2.0%(712명 / 36,122명)

□ (기존 감면건수 중 감면율 상향 건수) 2020년 기준 전체 감면건수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유형별 농어업인 비율을 적용하여 기존 감면건수 중 감면율 상향 건수 추정

- (취득세: 농업인) 기존 자경농민 대상 취득세 감면건수 69,202건 중 개정안에 따라 감면율 상향이 적용되는 후계·청년 농업인 대상 감면건수는 2,695건으로 추정

[표 15]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상향 건수 추정: 농업인¹⁾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상향대상 = 후계·청년 농업인 - 신규 감면대상
= 45,887 - 17,845
= 28,042(명)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상향 건수 = 2020년 기준 취득세 감면건수 × 기존 감면대상 중 감면율 상향대상 비율
= 69,202 × (28,042 ÷ 719,952)
= 2,695(건)

주: 1) 기존 감면대상 및 신규 감면대상 인원 수는 [표 9] 및 [표 10]의 인원 참고

- (취득세: 어업인) 기존 자영어민 대상 취득세 감면건수 373건 중 개정안에 따라 감면율 상향이 적용되는 후계·청년 어업인 대상 감면건수는 192건으로 추정

[표 16]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상향 건수 추정: 어업인¹⁾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상향대상 = 후계·청년 어업인 - 신규 감면대상
= 36,122 - 590
= 35,532(명)
개정안에 따른 감면율 상향 건수 = 2020년 기준 취득세 감면건수 × 기존 감면대상 중 감면율 상향대상 비율
= 373 × (35,532 ÷ 69,114)
= 192(건)

주: 1) 기존 감면대상 및 신규 감면대상 인원 수는 [표 13] 및 [표 14]의 인원 참고

- (등록면허세) 2020년 기준 농어업인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건수 36.9만건 중 후계·청년 농어업인 대상 감면건수는 26,805건(7.3%)으로 추정
 - 전체 농어업인 중 후계·청년 농어업인의 비율은 7.3%(전체 농어업인 112.9만명 중 8.2만명) 수준

[표 17] 개정안에 따른 감면건수 추정

(단위: 건)

구분	신규 감면건수	기존 감면건수 중 감면율 상향 건수
자경농민 취득세	1,715	2,695
자영어민 취득세	3	192
농어업인 용자 관련 등록면허세	-	26,805

- 건당 감면액 및 추정한 건당 세수효과에 후계·청년 농어업인 대상 감면 건수 추정치를 곱하여 총세수효과 추계

[표 18]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구분		자경농민 취득세	자영어민 취득세	농어업인 용자관련 등록면허세
신규 감면대상	건당 감면액(만원) (A)	128.9	126.4	-
	감면건수(건) (B)	1,715	3	-
	세수효과(억원) (C=A×B)	22.1	0.04	-
기존 감면대상	건당 세수효과(만원) (D)	25.8	25.3	1.4
	감면건수(건) (E)	2,695	192	26,805
	세수효과(억원) (F=D×E)	7.0	0.5	3.8

- 농어업인의 직접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2023년 1년간 총 3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3년까지 적용 예정인 농업인 직접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후계·청년 농업인을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경우, 취득세는 2023년 1년간 총 2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3년까지 적용 예정인 어업인 직접 취득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후계·청년 어업인을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경우, 취득세는 2023년 1년간 총 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용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상향(현행 50% → 개정안 60%)하고, 전체 농어업인의 용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2023년 1년간 총 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2023년

(단위: 억원)

	2023년	누적	연평균
농업인의 직접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29.1	-29.1	-29.1
어업인의 직접 취득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감면율 상향(안 제9조제1항)	-0.5	-0.5	-0.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용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 10조제1항)	-3.8	-3.8	-3.8
계	-33.3	-33.3	-33.3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
과장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고은비
연락처	02-6788-4839
	eunbi15@assembly.go.kr
